

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2. 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문화유산과장 정상훈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관의 효율적·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.
- 기념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.
- 기념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기념관 자료의 수집 및 감정에 대한 사항(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).
- 기념관 시설의 대관 및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).
- 기념관 내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(안 제2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, 향남읍 제암리에 설치될 예정인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 관람에 필요로 하는 사항·운영 위원회와 자료감정위원회에 관한 사항·자료의 대여 및 시설의 대관 등을 담고 있으며,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을 통하여 화성시 최초로 설립되는 독립운동기념관의 개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, 향후 시민들에게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전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

- 본안 제18조제6호에서 “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, 시설 대관을 제한” 하여 「공직선거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**수정가결**

7. 수정안 요지 : 시설의 대관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, 모든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예외없이 제한하는 안 제18조제6호를 수정가결함.

※ 수정대비표 붙임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수정 대비표

[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]

수 정 전	수 정 후
<p>제18조(대관의 제한) 시장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나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신청한 경우 2.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. 대관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대관하려는 경우 4. 대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.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 <li style="color: red;">6. <u>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</u> 7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.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·운영 및 관립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시설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	<p>제18조(대관의 제한) 시장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나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신청한 경우 2.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. 대관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대관하려는 경우 4. 대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.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 <li style="color: blue;">6. <u>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7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.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·운영 및 관립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시설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2. 6. 송선영 의원 등 7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송선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와 관련법인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4조의 삭제로 기존 복지위원 제도가 폐지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폐지조례안은, 복지위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던 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와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4조가 2017년에 삭제됨에 따라, 그 근거가 사라진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,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대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,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2. 6. 이용운 의원 등 7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이용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본 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데 입법의 목적이 있음.

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 보조견의 정의 (안 제2조).
-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사업 (안 제4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,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을 원활하게 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,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보조견 출입을 위한 대시민 홍보 등을 담고 있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을 통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과 시설 등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,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식변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2. 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생활보장과장 이희정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. 12. 31.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.
 - 「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→ 「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」
- 조례 목적 및 세입·세출 정의 수정(안 제1조 및 제2조).
 - 「의료급여법」 제26조제1항,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
- 상위법 위반 및 중복 내용 삭제(현행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).
 - 「의료급여법」 제17조제1항, 제21조제1항, 제22조, 제24조, 제2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6항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제1항
 - 행정안전부 『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』
- 존속기한 5년 연장 및 중복 내용 삭제(안 제3조).
 - 「지방회계법」 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,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- 별지 서식 삭제(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삭제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, 제명의 변경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의 연장, 그리고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조문의 정비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검토결과, 상위법 등 관계법령과 배치됨이 없고, 「의료급여법」에서 명시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그 정비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2. 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복지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생활보장과장 이희정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「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공영장례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공영장례의 목적·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.
- 공영장례의 대상, 내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- 공영장례의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선희)

- 본 조례안은,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화성시가 직접 장례를 치르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 공영장례의 대상이 되는 시신에 대한 범위·지원사업의 종류·장례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,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을 통하여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보건복지부 「장사업무안내」와 같은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,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